

사천시청밧읍·면·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-제55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6. 10. 13 .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청밧읍·면·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동서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동서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축부지로 변경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법제처 법령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인용법명 낫표(「 」)표시
(안 제1조)
- 나. 동서동사무소 소재지를 서동 303-1번지에서 서동 272-4번지로 변경
(별표와 같음)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 - 2)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
 - 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(제109회 - 총무위 부록)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청밧읍·면·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청밧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청 밧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

별표의 동서동의 소재지 중 “서동 303-1번지”를 “서동 272-4번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 <p>[별표] 동서동의 소재지 중 서동 <u>303-1</u>번지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 <p>[별표] 동서동의 소재지 중 서동 <u>272-4</u>번지</p>

관련법령 발취

【지방자치법】

[일부개정 2006.5.24 법률 제7957호]

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. <개정 1994.12.20, 1999.8.31, 2005.3.24>

②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【지방자치법 시행령】

[일부개정 2006.6.29 대통령령 제19566호]

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, 특별시,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서는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로 결정하고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읍·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. <개정 1994.7.6, 1995.7.1, 2006.6.29>

[일부개정 2005.3.24 법률 7398호, 시행일 2005.9.25]